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50

발의연월일: 2021. 6. 17.

발 의 자:고영인·김승남·남인순

박성준 • 백혜련 • 유정주

유준병 • 이용빈 • 전용기

전재수 · 정성호 · 조오섭

최혜영 · 허종식 · 홍정민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,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취급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이 높으며, 송달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신 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·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5조 및 제81조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제79조제2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

제81조제1항 전단 중 "자"를 "자(이하 이 조에서 "납부의무자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지"는 "독촉"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(생	제75조(보험료의 경감 등) ① (현			
략)	행과 같음)			
②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	2			
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			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				
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				
익을 제공할 수 있다.				
1.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	1.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			
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	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			
<u>받는 경우</u>	<u>독촉을 제79조제2항 및 제81</u>			
	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			
	<u>받도록 신청한 경우</u>	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	
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	제81조(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			
처분) ① 공단은 제57조, 제77	처분) ①			
조, 제77조의2, 제78조의2 및 제				
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				
하는 <u>자</u> 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	<u>자(이하 이 조에서 "납부의</u>			
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	<u>무자"라 한다)</u>			
수 있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				
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				
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				

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 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 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 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⑥ (생 략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할 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 제79조제 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고지" 는 "독촉"으로 본다.
- <u>⑤</u> ~ <u>⑧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